

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, 재판기록 열람·등사 강화를 위한 「형사소송법」 등 법률 개정안(8개) 국무회의 통과

- 「형법」상 일반 살인·강도 등 ‘특정강력범죄’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
-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·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 가능

-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, 재판기록 열람·등사 강화를 위한 「형사소송법」 등 법률* 개정안이 오늘(2. 27.)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
* (법무부) 「형사소송법」, 「특정강력범죄법」, 「성폭력처벌법」, 「아동학대처벌법」, 「스토킹처벌법」 / (복지부) 「장애인복지법」 / (여가부) 「아청법」, 「인신매매방지법」

- 개정안은 △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되어 있던 **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‘특정강력범죄’**(「특정강력범죄법」에 규정)로 확대하여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**국가의 법률지원을 강화**하고, △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·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등 **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·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**하려는 내용입니다.

【 개정안 주요 내용 】

▶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

- (기존) 성폭력, 아동·장애인학대, 인신매매, 스토킹 ⇨ (개정안) 살인·강도·조직폭력 등 「특정강력범죄법」에 열거된 ‘특정강력범죄’까지 확대

* ‘19세 미만’·‘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’는 의무적 지원 / 기타 선별 지원

▶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·등사권 강화

- (불복 절차 신설) 재판기록 열람·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, 상급심에서 이를 다룰 수 있도록 불복 절차 마련(즉시항고·재항고)
- (특례규정 정비)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는 중대 강력범죄

또는 취약 계층 대상 범죄로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, 그 피해자에게 신변보호·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, 재판기록 열람·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

* 특례규정 적용 대상(=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) : 특정강력범죄(살인·강도·조직폭력 등), 성폭력, 아동·장애인학대, 인신매매, 스토킹

-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(단장: 정책기획단장 박승환)를 구성하여, '부산 돌려차기 사건' 피해자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며, 법무부·보건복지부·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.
-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"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,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."고 밝혔습니다.

1. 추진 배경

- 현행법상 성폭력, 아동·장애인학대, 인신매매,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, 위와 같은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「형법」상 일반 살인, 강도 등의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습니다.
- 한편,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·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▶ '부산 돌려차기 사건' 피해자의 제안 내용('23. 10.) 中

- "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해주지 않았고,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음.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(재판기록을) 모두 공개하고,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음"

2. 개정안 주요 내용

가.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(「특정강력범죄법」 개정)

○ 개정안은 「특정강력범죄법」이 중대범죄로 규정한 ‘특정강력범죄’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.

- 기존의 성폭력, 아동·장애인학대, 인신매매, 스토킹 이외에 「형법」에 규정된 일반 살인, 강도와 「폭력행위처벌법」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.
- ‘19세 미만’이나 ‘심신미약 장애인’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(스토킹범죄는 예외),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하여 지원하는 체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.



* △ "19세 미만" 또는 "심신미약 장애인" 피해자 →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(단, 스토킹범죄는 예외)
/ △ 기타 피해자(스토킹범죄 포함) → 사안별로 판단하여, 필요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

나.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·등사권 강화(「형사소송법」 등 8개 법률 개정)

① 불복 절차 신설(「형사소송법」 개정 ⇨ 모든 범죄 대상)

○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·등사 신청을 법원이 (일부)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(즉시항고·재항고)를 마련하였습니다.

- 또한, 불복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,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·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게 됩니다.



② '중대 강력범죄'와 '취약 계층 대상 범죄' 피해자에 대한 특례(「특정강력범죄법」 등 7개 법률 개정 ⇨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범죄 대상)

○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'중대 강력범죄'와 '취약 계층 대상 범죄'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·등사를 허가하도록 개선됩니다.

- (대상 범죄)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는 살인·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나, 아동·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에서 선별된 것이므로,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·등사권 특례도 그와 범위를 일치시켰습니다.

*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범죄에 해당하면,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실제 지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재판기록 열람·등사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

- (기준 일원화) △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, △ 확정기록 일반의 열람·등사 제한 사유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용*하였습니다.

* 예외 사유 : △ 안보, 공공질서 등 △ 사건관계인의 명예, 사생활의 비밀, 생명·신체의 안전 등 △ 증거인멸·도주 등 사법방해 우려 △ 피고인의 개선·갱생 △ 영업비밀 침해 + ‘현지성’·‘중대성’

⇒ 예외 사유는 ‘현지’하거나 ‘중대’해야 하며, ‘원칙적 허가’의 예외 사유일 뿐이므로 법원은 예외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열람·등사를 허가할 수 있음 / 피해자는 법원의 (일부) 불허나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·재항고 가능

유 형	기 준	개정안
성폭력범죄 (성폭력처벌법)	피해자 변호사 특례만 규정 (피해자 변호사가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)	피해자 및 그 변호사의 특례 규정으로 통일* (원칙적으로 허가, 불복절차도 도입)
아동학대범죄 (아동학대처벌법)		
장애인학대범죄 (장애인복지법)		
인신매매범죄 (인신매매방지법)		
스토킹범죄 (스토킹처벌법)	피해자 및 그 변호사의 특례 규정 (허가 여부는 법관 재량)	
19세 미만 대상 성범죄 (아청법)		
살인, 강도, 조직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 (특정강력범죄법)	특례 규정 × (형사소송법 적용)	
범죄 일반 (형사소송법)	허가 여부는 법관 재량 (불복 ×)	불복절차 도입

* ①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기록(검사가 결정 / 피해자는 법원에 준항고 가능)
/ ②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

- (검사 보관 기록에도 적용) △ 기존에는 법원이 보관 중인 재판 기록과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만 특례의 적용 대상이었으나, △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기록을 추가하였습니다.

※ △ 허가 여부는 법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가 결정하고, △ (일부) 불허나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로 법원에 불복 가능

3. 향후 계획

- 이번 개정은 우리 헌법이 명시한 **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**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, **신변보호와 권리구제**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-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여,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**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**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.

【첨 부】 신구조문대비표 8부

법무부 담당 부서	검찰국 형사법제과	책임자	과 장	한상형 (02-2110-3307)
		담당자	검 사	이정아 (02-2110-3564)
	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	책임자	과 장	정가진 (02-2110-3139)
		담당자	사무관	강성우 (02-2110-4456)
보건복지부 담당 부서	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춘희 (044-202-3310)
		담당자	서기관	최기전 (044-202-3301)
여성가족부 담당 부서	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	책임자	과 장	이재웅 (02-2100-6581)
		담당자	사무관	정연중 (02-2100-6457)
	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	책임자	과 장	이정애 (02-2100-6401)
		담당자	주무관	조준홍 (02-2100-6405)

